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2/15 통권 161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정보를 경영한다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외부회계감사를 제대로 실행하면 감사는 회계사의 위험업무가 아닙니다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한 후 창업투자회사로 전환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도 비과세 인정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익금산입 제외 경우(법인세 시행규칙 제44조)>

개념,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제외대상 열거	
특관자 거래차액	정상시기와의 차손액을 익금산입(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등 이중과세함	
특관자 대여금	가중평균당좌대출이자율 4.6%(시가) 미만이면, 차액의 익금산입(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됨)	
인정이 자 적 용 제 외	중소기업 직원	직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여액(지배주주는 제외)
	직원 학자금 등	직원의 경조사비나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직원급여 가불	직원에게 월정금여액 범위내 일시적 급료 가불액
	우리사주 조합 등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게 회사주식취득 소요자금 대여액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전환금 해당액
	해외투자지원	해외투자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여비, 급료, 기타비용, 선지급 대여금 등
	대표자 소득세 등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대여금(특수관계 소멸때까지)
	배당처분 소득세	법인의 배당, 상여처분 소득지급의제로 인한 소득세 대납액의 대여금
	한국자산관리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 처리 위해 설립한 전액출자법인의 대여금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3  
년  
2  
월  
15  
일  
(수)  
·  
주  
간  
제  
7  
호  
·  
통  
권  
제  
1  
6  
1  
0  
호  
E  
S  
G  
인  
프  
라  
고  
도  
화  
방  
안  
구  
비  
비  
0  
0  
0  
0  
0  
0

#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0호 / 주간 7호

2023. 02. 1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제외 경우(법인세 시행규칙 제 44조)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외부회계감사를 제대로 실행하면 감사는 회계사의 위험업무가 아닙니다	2
C E O 에 세 이	CEO는 정보를 경영한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회생채권 출자전환 문의	5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의 계산방법 문의	6
	-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 자기주식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유권해석 따라 달라진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9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10
직 장 인 Survival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15가지 지혜 - ①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법안-2180, 2022.08.24)	12
	- 조세특례제한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891, 2022.05.25)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지난해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대상 4853명, 28일까지 예정신고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한 후 창업투자회사로 전환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도 비과세 인정됨	12
세 무 정 보	-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5
경 영 정 보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3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 외부회계감사를 제대로 실행하면 감사는 회계사의 위험업무가 아닙니다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1.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양호한 피감고객 : 분식회계유인이 없음. 단, 회계공시 상의 확률적 절차적 오류는 분석적검토와 충실감사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밝혀짐.
2. 기업회계기준의 정상적용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오류적용은 통상적인 계정분석과 현장감사시의 분석적 검토와 질의응답으로도 어느정도 알아낼 수 있음+경영자 진술서가 핵심역할(은닉혐의 있으면 더욱 철저 분석)
3. 회계감사기준대로 충실수행 : 기업규모와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의 완전적용+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감사조서완비 : 외부감리와 민형사대응에 충분한 정도의 Defense 능력 구축(그러나 민형사피해주장원고가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많이 시달림 : 통계상 대부분 회계법인이 승소함)
4. 문제점은 감사의견변형 : 적정 이외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로 방어수단 있음. 특히 재무상태불량이거나 계속결손시, 강조사항이나 계속성불확실성언급으로도, 무고한 외부소송예방력 있음.
5. 다음의 핵심감사사항(KAM : Key Audit Matters)을 기재하여 공익보호와 외부소송예방력 갖춤.
  - ① 수익인식(36.8%) ② 손상차손(24.9%) ③ 재고자산(10.9%) ④ 공정가치평가(8.3%)
  - ⑤ 대손충당금(4.8%) ⑥ 특수관계자(2.9%) ⑦ 연결지분법(2.2%) ⑧ 법인세(1.9%)
  - ⑨ 사업결합(1.2%) ⑩ 충당부채(0.8%) ⑪ 개발비(0.6%) ⑫ 리스(0.3%)
6. 언제나 필사즉생임(문제되는 피감고객 계약해지하고 떠나보냄을 각오하면 공익도 보호하고, 모두가 살 수 있음)

# CEO는 정보를 경영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다방면에서 유태인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가 유태인이고 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인 칼 맑스도 유태인이다. 아흔네살 나이에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경영학의 ‘구루’(guru)인 피터 드러커도 유태인이다. 또 오늘날 전세계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S)의장인 그린스판(Alan Greenspan)도 그렇다. 예수도, 네델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도,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희극배우 채플린도, 정치외교가 키신저도, 영화감독 스피버그도 유태인이다.

미국 신대륙 발견자 컬럼버스도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도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과 레이몽 아롱도 이태리 화가 모딜리아니도 그렇다. 명저 경제원론의 저자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샤뮤엘슨도 유태인이다.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유태인 스타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학계 문화계에만 그들이 화려하게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돈을 만지고 장악하는 데에도 그들은 천재적이다.

오늘날 유태인이 국제 금융계에서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럽의 부리깊은 로스차일드(Rothschild)가문을 본보기로 꼽을 수 있다. 이 가문의 시조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근거지로 삼았다. 그 후 여러 아들을 파리 런던 비엔나 나폴리 등으로 분가시켜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계에서 각각 부리를 깊게 내리게 했다. 귀금속 거래와 동전교환으로 출발한 그들은 빠른 속도로 각국의 금융계를 장악했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19세기 초반에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 웰링톤 장군과 프랑스 나폴레옹이 마지막 힘 겨루기를 했다.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 후예는 비둘기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영국이 이겼다는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는 증권거래소에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영국 국채를 팔았다. 이를 본 투자자들은 영국이 패배한 줄 알고

앞다투어 채권을 팔았다. 채권가격은 폭락했다. 값이 떨어진 채권을 로스차일드 측근이 몰래 사들인 것은 물론이었다. 영국의 승리가 나중에 밝혀졌다. 채권값은 폭등하고 로스차일드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를 혹자는 ‘전쟁 마케팅’이라고 불렀다.

현대기업의 번영도 정보를 여하히 누구보다 앞서 채취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정보화사회이므로 디지털경영에 앞서라는 뜻만이 아니다. 의당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방면에 걸쳐 끊임없이 고급정보가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을 겪는 와중에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항상 흡수하고 있었다. 그런 후 걸러낼 것은 걸러내면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 활용해 나갔다. S그룹도 수십년동안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S그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정보의 채취와 활용능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S그룹은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여·야권력과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모든 정부기관과도 일이 있건 없건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아예 담당 중역은 회사출근보다 담당관공서 출근이 앞선다. 또 밑바닥 시장에서 흘러 다니는 소문까지 압지처럼 빨아들이고 가공하여 값진 정보로 활용하는 게 알미울 정도로 탁월하다. 그것조차 사회의 한 일원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3일(금)	2월 6일(월)	2월 7일(화)	2월 8일(수)	2월 9일(목)
미	달 러 (USD)	1219.30	1227.20	1247.50	1256.00	1257.10
일	본 엔 (JPY)	947.47	931.18	940.34	957.94	957.32
영	국 파 운 드 (GBP)	1490.84	1478.10	1499.56	1513.23	1517.57
캐	나 다 달 러 (CAD)	915.46	914.90	927.72	937.73	934.96
홍	콩 달 러 (HKD)	155.45	156.39	158.99	160.03	160.16
중	국 원 (CNH)	181.49	181.99	183.46	184.89	185.19
유	로 화 (EUR)	1330.13	1323.90	1338.01	1347.44	1346.73
호	주 달 러 (AUD)	862.84	849.53	858.90	874.05	870.67
싱	가 폴 달 러 (SGD)	930.59	926.92	939.24	948.43	948.1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7.16	288.21	292.98	291.89	292.45

### 회생채권 출자전환 문의

- Q**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액면가 5,000원, 10만주 출자전환 주식으로 입고  
 (증권계좌 잔고 내역에는 매입총액 5억원, 평가총액 3억원, 평가손실 -2억원으로 표시됨)
1. 장부계상시 매도가능증권 5억원 계상 후 평가손실 2억원도 함께 계상하는게 맞을지 또는 막바로 평가총액인 3억원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여부
  2. 3.16:1의 비율로 감자시 해당 비율로 매도가능증권 감액을 시키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 A**
1. 출자전환이 이행되면 출자전환채권을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로 반영하면 되는데, 출자전환에 따라 입고되는 주식의 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감자시 감자대가와 매도가능증권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문의

- Q**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은 경우에 무상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상증령 31의4 제2항)  
 이 경우 과세제외되는 무상대출이익 1천만원의 기준이 1년기준인지 아니면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합산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대출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는 상태이며 3년이 지난후 원금만 상환한 경우입니다.
- A**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상증법 제41조의4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출기한 약정이 없다면 1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법인 주택매각 부가가치세 대상

- Q** 저희는 법인으로 기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려 합니다.

(\*) 매각 부동산 대상

가. 기존 임대자산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나. 전용면적 : 69.68m<sup>2</sup>

다. 매수인 :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예정

라. 시세차이로 매각이익 발생

1.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 국민주택규모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서 배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 매수인이 인수한 오피스텔을 사용목적(사업용으로 사용, 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시세차익에 대한 초과분예 이율의 적용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신 부탁 드립니다.

A

1. 귀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가 과세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경우만 추가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자기주식

Q

자기주식이 계속 마이너스 부인상태인데 직원들 우선주 주식인수해서라면, 자기주식을 결국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대로 부의상태로 놔둬도 되는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A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다른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로 처리하면 되나, 특별한 거래가 없는 상태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지점사업장 등이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업장간 재고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 법인의 사업장간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의 잔존재화에 대해 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그 잔존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켜 과세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

## 사업장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때란 폐업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라도 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는

경우, ② 동일 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던 자가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는 경우, ④ 미착재화,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장 통폐합 및 지점폐업을 하는 경우 지점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지점의 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본점으로 이동된 뒤 판매□출고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고정자산의 경우 지점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종전 지점의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본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 - 0 - 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 부가 46015 - 407, 2001. 2. 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유권해석 따라 달라진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주택용도변경	지난해 10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 비과세, 중과세 여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li> <li>• 이후 =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li> </ul>
주택 멸실 (토지만 거래)	지난해 12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 비과세, 중과세 여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li> <li>• 이후 =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li> </ul>

### 화

####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 개발	25	8-15	2	중소 50, 중견 40, 그 외 20	10	5	1	3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20-30		12	6	3	3
국가전략 기술	40-50	30-40	30-40		16	8	8	4
중견 적용 범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개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	1월 1일
과세 대상자	약 15만명(추정치)
기본공제 한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



## 법인세 개정안 주요 내용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2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10%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15가지 지혜 - ①

### 1. 신호를 알아차린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 고동이 커지거나 손에서 땀이 나는 것에서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인식하지 않으면 대처조차 하지 못한다.

### 2.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가져오는 증상을 안다.

초조, 피로, 불안정, 신체의 통증, 손바닥의 땀, 심장 고동이 커지는 것, 과식, 두통...., 이러한 상황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있는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증상을 알아야만 한다.

### 3.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불안한 것 같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주위의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

### 4. 건강진단 결과로 깨닫는다.

스스로는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 않다. 건강진단에서 혈압은 어땠는가? 갑상선은 괜찮은가? 다른 병은? 스트레스에 의한 물리적인 증상이 건강진단에 의해 분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5. 매일 뱃속에서부터 웃는다.

웃으면 체내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활발해져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기운을 내자!

### 6. 몸에 좋은 식사를 한다.

적절한 식사로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자. 지방은 줄이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많이 섭취한다. 카페인과 설탕은 적게 섭취한다.

### 7. 매일 최저 30분은 운동을 한다.

매일 무언가 운동을 하자. 30분 이상 산책이나 사이클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다.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한 후 창업투자회사로 전환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도 비과세 인정됨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법인-2180, 2022.08.24

### 질 의

-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질의법인 이 창투사로 지위를 전환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 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지위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818, 2022.03.22

### 질 의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891, 2022.05.25

###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529, 2022.08.17

### ■ 질 의

- '20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이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5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 '21사업연도에 해당 선박건조 관련 권리 일체를 해외 SPC에 양도하고 그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BBCHP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선급금을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 해당 선급금 및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시기

### ■ 회 신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양도한 경우 쟁점 선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SPC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초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지난해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대상 4853명, 28일까지 예정신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제출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 국세청장,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유동성컨설팅 집중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 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우미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의 주 내용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부세 나눠서 낼게요."... 분납 신청자 7만명, 1인당 2200만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밝힌 사람이 7만명,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에 달했다.

중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2018년 이전에는 3000명 정도였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19년 1만899명, 2020년 1만9251명에서 2021년 7만9831명으로 급증했다.

총 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늘었다.

중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6개월까지 이자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만일 중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을 반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중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중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23만명으로 이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

#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행정안전부, 2023. 1

- 
- (신고 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 서비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신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6.	2.7.	2.10.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에게 발송

□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 족	배 우 자	배 우 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 홈·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 (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3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 1 주식거래내역 제공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4. 주식등 거래내



역

-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 등 거래내역

## ② 합산신고 미리채움

-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 선택
  -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 ③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우미\*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 ④ 챗봇 상담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챗봇상담
-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 전자신고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 제공되는 핵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5 납부기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증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신고/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4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 (새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5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납부입니다

-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 참고 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분	내 용	
과세범위	·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국내주식 : 10% ~ 30%	
	구분	세 율
	중소기업	10%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20%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신고·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2년 하반기 양도분의 신고·납부 기한 : '23년 2월)	
납 부	· 홈·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참고 2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2. 7. 13.)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3.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2.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23. 5. 31.

###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이후 ~ '22.12.31)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 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8. 국외주식을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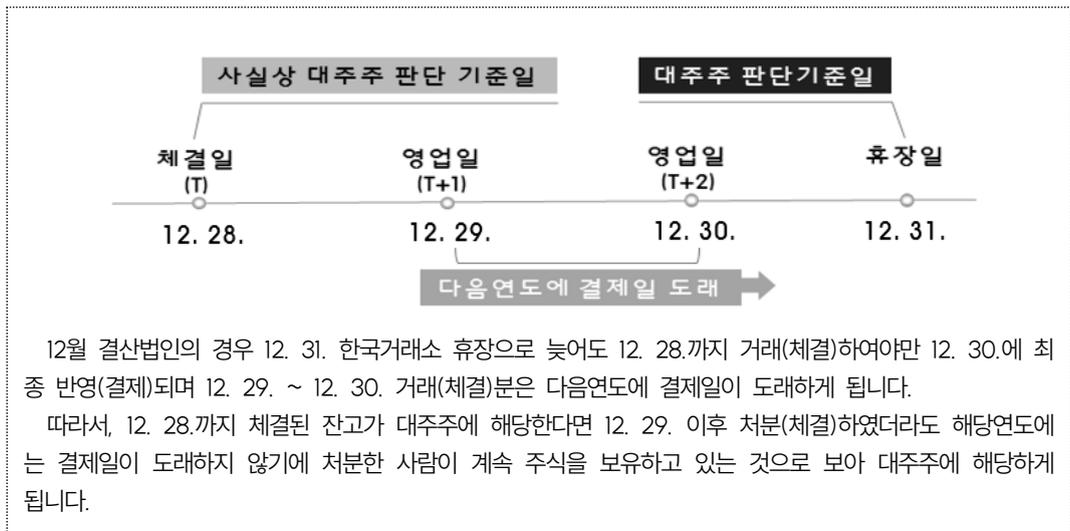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9.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체결일(T)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참고 3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li> <li>○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li> <li>○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2.28.)</li> <li>○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신고/납부 &gt; 양도소득세 &gt; 주식양도 신고도우미</li> </ul>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li> <li>○ 접근 방법: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li> <li>○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 (~2.28.)</li> <li>○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신고/납부 &gt; 양도소득세 &gt;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기한: '23. 2. 28.(화) 18:00까지</li> <li>○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 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손택스 (PC·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li> </ul> </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li>○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li> </ul>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li> </ul> </li> </ul>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li>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li> </ul> </li> </ul>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li> </ul>

## 참고 4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움미

###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

####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II 국내주식 등

##### 1.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외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인도하는 주식등 및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인도하는 주식등

② 비상장법인외 주식등 다만, 한국정의시장(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인도하는 종소·증권거래 주식등은 과세제외

\*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약권

※ 대주주(여부는 보유 주식별로 판단) ( Ө) A, B 주식을 보유한 경우 A주식 대주주, B주식 소액주주로 해당할 수 있음

< 참고 > 과세대상 주식등의 범위

□ 주식등: 주식<sup>①</sup> 또는 출자지분<sup>②</sup>, 신주인수권<sup>③</sup>, 증권예약권(DR)<sup>④</sup>

□ 주식: 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출자지분: 합법·합자·유한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분

□ 신주인수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

□ 증권예약권(DR: Depositary Receipts): 한국에탁결제원에 보관된 원주(原株)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약권서

##### 2. 과세대상 주식의 분류

구분	비율
상장주식	• 증권시장(국가행정시장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 ※ 대주주가 인도하는 주식등 및 소액주주가 참여하여 인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과세
비상장주식	• 증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 주식발행일(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①) 해당 법인의 지분 50% 이상 1) 소유 보유비율을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가 ② 과점주주의 지배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 부위에 걸쳐 인도하는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등을 환산하며,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1) 이후 양도분부터)
	• 주식발행일(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③) 골프장, 스키장, 휴양분도미니언,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부동산(지대) 보유주식*	• 해당 부동산의 과세대상 해당
사실(미)유한 부여 주식	• 1) 1인도 유한이 유한한 조건의 사실상 미유한 부여 주식 ※ 1) 1인도 유한이 유한한 조건의 사실상 미유한 부여 주식

\* 동일주식이 상장·비상장주식외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타자산으로 과세

#### 3. 대주주 범위

< 대주주 요건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K-OTC 증권·증권거래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1) '21년말(12월 결산법인) 현재 특수관계인은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을 취득하여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참고 >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판단시 고려할 사항

□ 12월말 사업연도 코스닥 상장 A시 주식을 '22년도에 증권시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 '21 12월말 현재 보유주식 현황 (보유비율 0.5%, 시가총액 14억원)

• 예) 1) 보유주식 현황에 대해 청산법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대금결제(12월) 전)까지 해당주식 보유비율이 이루어지도록 매도처분 계획이 '21년도에 이루어졌으나, 대금결제기 다중연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수에 포함됩니다.

2) 시가총액은 '21 12월말 현재 최종시가(가액)로 계산(한국거래소의 미지각 거래일 증가로 계산)하여 다른 경우에는 직전거래일 증가로 계산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참고 > 대주주 요건 면액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미코스피	1% 또는 2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미코스닥	2% 또는 2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미코스소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미비상장	4% 또는 2억원 이상 (17.1.1. 이후)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 4. 취득·양도시기

○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1) 상장주식의 대금 청산일: 장내·장외 결제일은 거래일 + 2일(T+2) 되는 날

2) 취득·양도시점이 다른 경우: 취득·양도한 지분율 면액으로 함

취득·양도시기의 예외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일

2)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3) 장기할부조건: 명의개서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날

26 안세재경저널 · 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 · 상담 829-7575)

2023 · 02 · 15



## 4. 전자신고가이드

###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흐름을 안내

#### 1.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1. 신고·납부하기**

1. 증권사 HTS → 2. 국세청 홈택스 → 3. 로그인 → 4. 신고/납부 → 5. 양도소득세 → 6. 신고도움서비스 → 7. 예정신고 작성 → 8.9 기본정보(양도인 양수인) → 10.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11. 세액계산 및 확인 → 12. 신고서 제출 → 13. 세금 납부하기

**1. 증권사 HTS 배너(또는 홈페이지 배너)**

- 배너에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게시 안내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

2023년 2월은 증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 납부기한 : ~ 2023. 2. 28.(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1) 2년 내(1년별 결산법인)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2) 2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주로서 취득에 따라 지분을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상장법인·주주명부확인방법](#) | [비상장법인·주주명부확인방법](#) | [주주명부확인방법](#)

####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3.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5. 자주 묻는 질문

###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확정신고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 국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누진세를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율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기 예정 신고분과 합산신고하거나 확정신고(다음해 5월)를 하여야 함
    - 확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시술통합이용된 배우자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7-9, §1 및 §167제8호)
  - (3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정지배관계 법인
  - (3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정지배관계 법인 (지분율, 시가)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9억 000만 원	1% 또는 189억 000만 원	1% 또는 109억 000만 원
코스닥	2% 또는 20억 000만 원	2% 또는 189억 000만 원	2% 또는 109억 000만 원
코넥스	4% 또는 109억 000만 원	최종	최종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상장된 주식의 대주주 요건 산정 방식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량 또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며
- 시가총액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함 (없는 경우 직전거래일 최종시가총액)

**4.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주식 양도 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대주주로 보는 것인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함

◀ 관련 배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 상담 4팀 - 696(2004.05.18)**  
**Q 대주주 해당 여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

**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사외 대주주인데,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A 주식 전부를 당해연도에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는 것인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관련 배규 및 판례 ▶

**지분거래권리와 3890(2019.12.19)**  
**Q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음

## 6.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신고서 작성요령 및 무신고 사례		번호	사 례
1	중소기업 손익주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ex) 양도일 현재 독립기업 및 경영자에게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중소기업집업단체에 속하는 최최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1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ex)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볼
2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 20~25%,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지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대금상환일인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ex)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도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 ex) 직전 사업연도말에 매도 주은 체결되었더라도 결제일이 다음연도에 도래하면 양도일인 보유주식으로 볼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지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14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의 주식만 순익이 가능 ex)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아닌 상장법인 손익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 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순익 통산 불가
4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을 신고	15	법정상 대주주의 범위가 매도 연도 종료일 경우 변경된 경우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변경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ex) 12월말 사업연도 종료일 상장법인 A사에 [8월~11월 12월말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시가총액 14억원(지분율 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0.1~3월 까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4월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20.3월 이전 양도한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19년도말 현재 15억원이상, 20.4월 이후는 '19년도말 현재 10억원 이상(2월말 법인일 경우) * 코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준수(시장)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시가총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말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적용
5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ex) 일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일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16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지분율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해당연도에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볼 ex) 12월말 사업연도 종료일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전년 12월말 현재 1.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양해연도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대주주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총액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함)
6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 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해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는 경우 세액이 덜한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7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종영정신고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여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18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총액 14억 원(지분율 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년 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순익통산이 가능하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순익을 통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 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하는 경우	19	20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각각 공제 받은 경우 * 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9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많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고 1차 통산 후 남은 차손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인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		
10	상장법인 대주주에 판단해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일 시 이후의 특수관계가 소용없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11			

## 참고 5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사례 1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2년 7월~12월  
국내주식 양도차익  
2억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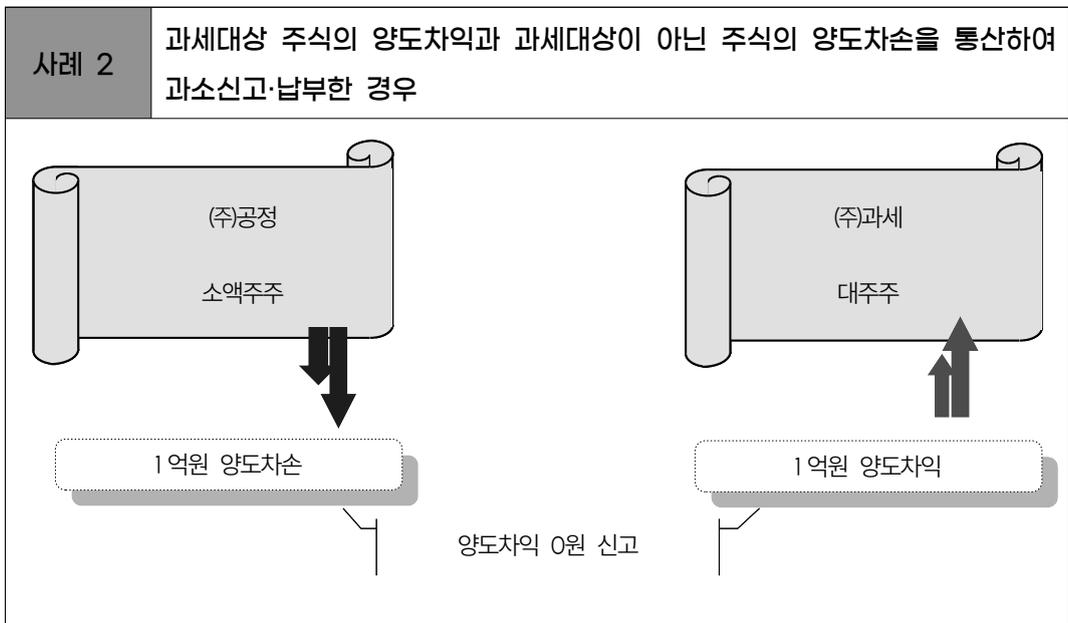
'22년 7월~12월  
국외주식 양도차손  
1억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예정신고  
양도차익 1억원

○ 대주주 A씨는 '22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2억 원,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 1억 원이 발생하였음

- '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1억원으로 신고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주식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이후,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함
  -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납세자 A씨는 상장법인 (주)공정과 상장법인 (주)과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다 '22년 하반기 중에 양도하여, (주)공정 주식 양도차손 1억 원, (주)과세 주식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 \* (주)공정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나 (주)과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
  - '23년 2월 예정신고 시 A씨는 (주)공정과 (주)과세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0억원,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함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주)공정의 양도차손은 (주)과세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 예정신고 시 (주)과세의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함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 행정안전부, 2023. 2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 투자·경영에 있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
- 금번 방안은 기업의 ESG 관련 대응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12.9)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추진배경 )

- ESG는 UN PRI\* 등을 통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글로벌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었고,
  -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공시기준 제시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공급망 실사\*\*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협



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

\*\*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

□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공공기관 ESG 경영, ④ESG 채권·펀드 활성화, ⑤시장자유율규율체계, ⑥공공부문 ESG 투자,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

### ( 주요내용 )

①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 공식 자문기구

-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ESG 공시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 추진

○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시제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제도 :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 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

○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를 마련할 것이

다.

-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 · 사례 · 예시, 위상방지 등을 위한 사전 · 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 모지수(예: KOSPI 200)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④ (ESG 정보 · 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 · 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제공)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 특성화 대학원 · 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⑤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 ·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 · 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 ('22)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 ('23) ESG 위원회(예) 등
  -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 · 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⑥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론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23년 초에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



## I 추진배경

### ◇ 기업·투자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투자가 민간중심으로 확산

- ESG는 UN PRI\*(’06년) 등을 통해 본격 등장하여, 블랙록 ESG 투자선언(’20.1월)·글로벌 기업 ESG 경영 도입 등 민간중심으로 확산
  -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

### ◇ 코로나19,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 최근 국제기구, EU 등의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

-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ESG 공시 국제표준화(’23.上), EU ESRS\*,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22년말)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 강화 전망
  -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공급망 실사\*\*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ESG 이행 부담 부과 예정
  - \*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
  - \*\*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

### ◇ 정부 지원 강화·인프라 구축 고도화 → 민간 중심의 자생적 ESG 생태계 조성 가속화 필요

- ※ 새정부 국정과제(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계 지원 강화 등)에 ESG 포함
- 정부는 ESG 글로벌 논의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21.8월)
  - \*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공공기관 ESG 경영, ④ ESG 채권·펀드 활성화, ⑤시장자율규율체계, ⑥공공부문 ESG 투자,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
  - K-ESG 가이드라인·녹색분류체계 마련, ESG 투자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확대 등 추진중
-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공급망실사 등으로 국내 공시체계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 ESG 인프라 지속 구축 필요

↳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비하고,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

## II ESG 국내외 현황

### 1 ESG 국제 현황

#### ◇ (정부·국제기구) 기후위기·양극화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 중

- ISSB 국제표준화, EU ESRS, 미국 SEC 기후공시의무화 등 추진중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를 설립해 ESG 일반 및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국제표준화 추진('23.上)
    - \* ('22.3월) 초안 발표 → ('22.7월) 전세계 의견 수렴 → ('23.上) 최종안 발표
  - EU는 ESRS 마련\*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EU 기업·외국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 ('22.5월) 초안 발표 → ('22년말) 의회 통과 → ('24.1월) 시행
    - \*\* ('24년) NFRD 적용 대상 기업 → ('25년) NFRD 비적용 대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 → ('26년) 상장중소기업, 소규모 은행 및 중속 보험회사 중 일정규모 이상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도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 예정('22년말)
    - \* ('23년) 시총 7억달러 이상 기업 → ('24년) 시총 0.75억 달러 이상 기업 → ('25년) 시총 0.75억달러 이상이거나 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
- EU는 공급망실사 등을 통해 EU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거래기업의 ESG 경영 관리 의무화 계획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23년 시범도입)
  - EU는 ESG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마련('23년 시행)·개선(원전 등 포함 의회승인, '22.7월)하였고 사회적분류체계(안)도 발표('22.2월)
    - \* 녹색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분류를 위한 기준 및 원칙



◇ (ESG 투자) 주요 금융·투자기관을 중심으로 ESG 투자 기반 마련중이며, 코로나 19 이후로 ESG 투자에 대한 수요 급증

-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기업에 ESG 경영 요구 확대,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투자 확대
  - \* '22.1월 연례 주주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직원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언급
  - 세계 주요 공적연기금도 자체 평가기준 수립 등을 통해 기업에 ESG 경영 전환 요구
    - \* CalPERS(美 공무원 연금)는 Net-Zero Set Alliance에 가입해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탈탄소화 유도
-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20년에 35조 달러를 넘었고 '25년에 50조달러 이상 전망(글로벌 지속가능투자협회)

◇ (ESG 경영)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강화,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경영 추진중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활성화중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까지 공시하며 협력기업의 배출량 감축 요구
  - \* 주요 52개국 매출상위 100개 기업 중 80%가 지속가능경영공시 수행('21년, KPMG)
  - \*\* Scope 3 : 기업 조직경계 외부에서 기업활동에 따라 유발된 배출(협력업체 배출량 포함)
- 구글·애플·BMW 등 주요기업들은 RE 100·RBA\* 등을 선언하고 협력기업에도 참여 요구
  -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사업 연합체

◇ (ESG 평가·컨설팅시장) ESG가 확산되며 기업 ESG 리스크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시장이 형성·성장

- 주요 기관\*들이 ESG 평가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중이고, ESG 데이터 수집·제공 시장도 활성화
  - \* S&P, Bloomberg, MSCI 등
- 글로벌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 및 금융회사 대상으로 다양한 ESG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지배구조 개선, ESG 공시, 투자전략, 리서치 등

## 2 ESG 국내 현황

### ◇ (ESG 공시) 상장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는 자율공시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의무 공시
- 삼성·SK 등 주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ESG 보고서 공시중이며, '21년기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80개사

### ◇ (ESG 투자)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선언('19.11월) 이후, 주요 투자기관들의 ESG 투자 급증

- 국민연금은 ESG 투자 확대('22년 AUM의 50% 목표),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21.11월) 마련 등 적극 주도
  - 주요 금융사는 ESG 투자 목표 설정, 전담조직 신설, UN PRI ('20년 8개사 → '21년 12개사) 참여 확대 등 ESG 투자 활성화 추진
    - \* 신한금융 ESG 전담조직 신설, 한화자산운용 ESG 액티브펀드 출시 등
- 국내 ESG 투자규모는 '20년 이후 크게 증가\*
  - \* ESG ETF(조원) : ('18) 0.3 → ('21) 1.6, ESG 채권(조원) : ('18) 1.25 → ('21) 86.8

### ◇ (ESG 경영)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중

-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공급망 관리 등 ESG 경영 적극 추진\*중
  - \* 삼성 중계열사 ESG 사업계획 수립, 현대차 '25년 배터리·수소전기차 67만대 목표 등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비용부담 등으로 ESG 준비는 미흡한 상태
  - \* 대한상의의 수출기업(300개) 공급망 ESG 실사 설문조사 : ESG 경영수준 (매우낮음) 41.3%, (다소 낮음) 35.9%, (다소높음) 21.6%, (매우높음) 1.2%

### ◇ (평가 및 컨설팅 시장) ESG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ESG 평가와 컨설팅 시장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조성

-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국내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제공, 로펌·회계법인 등은 ESG 컨설팅 사업에 참여

### III 향후 정책추진 기본방향

**정책 목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핵심 전략**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

**정책 과제 ① ESG 공시제도 정비**  
·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 ESG 공시·공개제도간 연계강화

**정책 과제 ②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기업 ESG 경영전환 지원  
·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 과제 ③ ESG 투자 활성화**  
·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

**정책 과제 ④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 ESG 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ESG 전문인력 양성

**정책 과제 ⑤ 공공부문 ESG 선도**  
·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 연기금 ESG 투자 확대

**추진 체계 ⑥ 민관 합동 ESG 협의회(가칭)**  
· (구성) 기재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 IV ESG 인프라 고도화 주요정책과제

#### 1 ESG 공시제도 정비

◇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병행

## ① 글로벌 공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공시체계 정비

- (국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
  - \*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한국의견서 제출('22.7월, 회계기준원에서 산업계 등 의견수렴)
  -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 추진('22년말) 등을 통해 국내의견 전달 노력
    - \* ISSB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4명 위원 중 한국인 1명을 위원으로 선임('22.7월)
    -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지속가능성기준 자문포럼)
- (국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비교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추진('23년)
  - \*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자본시장법령 등 개편 방안 검토
  - ESG 공시기준 국제 논의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국내기업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및 세부일정 구체화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안) ('21.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년) 전코스피 상장사
  - KSSB\* 설립 등을 통해 ISSB 국제표준, 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기준 등 마련 추진
    - \*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로 설립)

## ② 공시제도와 각부처 정보공개제도간 연계 강화

- \* 공시제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공개제도 :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 ESG 공시제도와 각부처 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 등을 통해 조정\*\*하여 기업 공시부담 완화('23년)
  - \* (예) 근로형태 현황 공시 '소속외 근로자수'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지표 유사 → 직원이 아닌 근로자수로 명칭 조정
  -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 개정 검토
- 중장기적으로 ISSB 국제표준 등에 따른 ESG 공시관련 법령 개정 등에 맞춰 의무이행간주\* 점진적 도입
  - \*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 공시한 것으로 간주
  - ESG 공시항목 중 의무이행간주가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
    - \* 국제적중요성, 실현가능성(정보취합단위, 시스템 연계 등) 등 고려해 의무이행간주 항목 지정(예 : 용수사용량, 정규직 근로자수 등)



## 2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

### 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

- (ESG 확산) 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21.12월)을 규모별\*('22년)·업종별\*\*('23년~)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 \* 중소·중견기업 K-ESG 가이드라인 : 중소·중견기업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ESG 항목 선정, ESG 경영체계 구축안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제시
  - \*\* 자동차, 전자, 바이오 등 주요 업종 마련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자가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심층진단을 실시\*('22.12월)
  - \* 업종별·기업유형별(수출, 대기업협력사, 고탄소기업 등) 특성에 맞게 배점·지표를 차별화하고, 누적 DB에 근거한 업종별 비교분석 제공
- K-ESG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이용편의성·실용성 제고 등을 위해 상호 연계 강화 및 홍보 방안 등 검토
- (교육·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컨설팅 확대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대상기업 확대 및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확대
    - \*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행방안에 대해 컨설팅(5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
    - \*\* 소규모·취약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체계·작업 관행 개선 등 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중소·중견 대상 사내전문가 육성 과정을 수도권 중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방으로 확대\*\*('22.12월)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평가 대응 등 교육
    - \*\* 지역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ESG 포상·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방안 추진 (~'23년)
  -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사업 전환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규모 확대
    - \* 기후대응보증(기보 및 신보, '23년 각각 5,000억원), 에너지전환자금(산은, '22.년 1조원), 지속가능연계대출(기은, '22년 2,000억원)
  - 벤처·스타트업계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22.7월)를 적용한 ESG 전용펀드 조성('22.12월)
    - \* '22.12월말 200억원 조성 예정(모태펀드 100억원 출자)

-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비용부담 없이 측정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간이 MRV (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23년~)
  - \* (측정·보고) 에너지사용량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진단 → (검증) 에너지공단에서 한전 전력데이터 등을 활용해 검증확인서 발급

## ②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고 업종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수출·협력기업의 ESG 대응력 향상 추진('23년~)
  -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실사 모의평가·컨설팅 등 지원
    - \* ('22년) 시범사업(자동차(부품), 전자 산업 등 최대 50개사 선정) → ('23년~) 정식사업으로 확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저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기업 협력사 등의 피해가능성 최소화 노력
  - \* 산업부를 중심으로 EU에 CBAM 면제·감면 요구,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개정 요구 등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 추진 중
- 자본조달과 해외수출시 기관투자자 및 산업얼라이언스\* 등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모범사례 발굴·확산
  - \* 전자, 자동차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연합(예: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등)
- 자율공시에 대한 검증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기준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민간 자율검증기준 마련
- 대기업의 협력사(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수준진단,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공('22년~)
  - \* ESG 경영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조특법시행규칙 개정, '22.3월)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컨설팅 등 실질적 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포럼('22.2월 출범)을 ESG 산업네트워크로 확대·개편('22.12월)
  - \* (포럼) 정보공유 → (네트워크) 컨설팅, 설비투자 등 실질적 지원
- 수출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ESG 수출 가이드북' 발간 등 추진('22.12월)



### 3 ESG 투자 활성화

◇ 민간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 개선하고, ESG 평가의 최소 자율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 ①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추진중인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녹색분류 체계 개정('22.12월)
  - \* 6개은행(산은, 기은 등), 4개기업(한수원 등) 참여(4~11월)
- 녹색분류체계 개정사항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22.12월)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 제시 및 투자 유도 등을 위해 '사회적분류 체계'(Social Taxonomy) 연구('23년~)
  - \* 인권, 근로자 안전, 일자리, 소비자 권익, 지역사회(산업), 공급망 협력, 공정전환 지원 등을 사회활동으로 규정
-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3년)
  -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사례·예시,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 ICMA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프로젝트 범주)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직접 목표
- ▶ (평가·선정) 발행기관은 사업 적격성 및 사회적목표와의 부합성 등 투자자에 설명
- ▶ (자금관리) 자금이흐름이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검증,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공개
- ▶ (외부검토) 외부검토키관을 지정하여 사회적채권에 부합한지 검증

-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3년)
-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23년) 등 ESG 지수\*\* 다양화 추진
  - \*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 모지수(예: KOSPI 200)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 ESG 지수 : ESG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지수(거래소는 현재 KRX ESG Leaders 150 등 10개지수 산정)
- SRI\*채권의 적격투자(워싱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후보고(자금사용처 투자자에 보고)의 질적 향상\*\* 유도
  - \*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등을 포괄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ESG 채권과 동일 → SRI 채권으로 등록되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채권 관련 정보 공시
  - \*\* (예) 기후채권기구(CBI) 등의 사후보고 관련 발행기관 모범사례 권고안에 따라 사후보고서

작성 권고

## ②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마련 및 ESG 평가 지원

-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권고안을 기초로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마련('23.1/4분기)

※ IOSCO 권고안('21.11월) 중 'ESG 평가기관'에 관한 부분(요약)

- ▶ ESG 평가방법론 및 원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
  - ▶ ESG 평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
  - ▶ 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 관계 등 회피
  - ▶ ESG 평가방법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적인 공개와 투명성 목표
- ESG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 제시
- 온라인 교육·포럼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활용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가이드런스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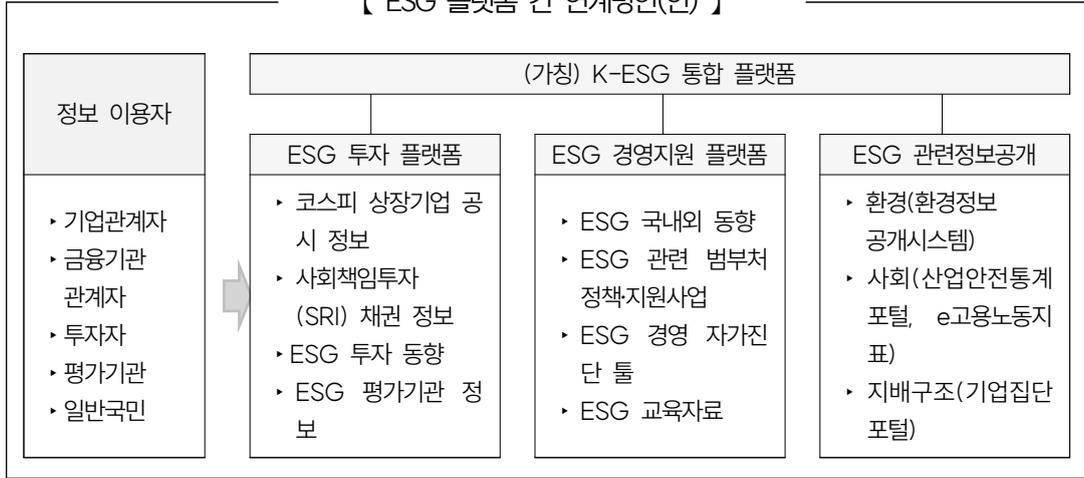
## 4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 ◇ ESG 정보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 제고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민간 ESG 확산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 ① ESG 정보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ESG 경영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 제공)하여 통합 정보 제공
  - '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하여 국내외 동향, 정부지원정책\*, 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 정보를 종합 제공('23.1월)
    - \* ESG 컨설팅, 융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 ESG 투자 플랫폼('21.12월 구축)은 모바일 서비스 개시, 정보 제공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22.11월)
    - \*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평가등급을 결합한 시계열 정보 등

【 ESG 플랫폼 간 연계방안(안) 】



- 부처별로 운영중인 환경정보(E), 노동·산업안전(S), 기업지배구조(G) 등 ESG 분야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 환경정보는 공개항목을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개편 추진하고 환경정보 공개시기를 단축\*('24년~)
    - \* (현행) 6월말까지 전년도 정보 등록후 12월말에 공개 → (개선) 6월 선공개후 검증
  - 산업안전은 법령·지침 등의 재해 예방 자료 및 각종 산재 조사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도록 정보제공방식\* 개선('22.12월)
    - \* 과거 지침 또는 과거 사고사례 제시 → 최신 사고 사례·법령·사업장 산재예방관련 지침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자료 일체 제공
  - 지배구조는 주요 정보항목의 인포그래픽화, 타기관 정보 제공사이트로의 연결링크 생성 등 기업집단포털\* 고도화('23.1월)
    - \*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우수사례를 포털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

② ESG 전문인력 양성

- 국내의 ESG 관련 분야 인력(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심사원, 경영컨설턴트 등)을 ESG 전문가로 전환('22.12월)
  - \* ESG 관련 전문교육·실무교육 등을 제공하며 '23년 최대 300명 육성
- 공급망 실사, ESG 평가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 환경 분야 인력 대상으로 ESG 평가·경영컨설팅·정보공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검증위원 자격 부여('23년)
- 국내 ESG 전문가와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포럼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ESG 전문가 역량 강화
-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 '23년)을 개설하고 교육수

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

- 경영·평가·공급망 실사 등 ESG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추진('24년~)

\* ESG 경영·투자·평가·컨설팅,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석사 과정 개설

## 5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로 민간 ESG 자발적 확산 유도

### ①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

- ESG 위원회 구성(공기업·준정부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및 경영평가 반영·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강화
  - \*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 ('22)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 ('23) ESG위원회(예) 등
- 환경·안전 등 분야별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
  - \* (환경)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 (안전) 공공기관 CEO 안전교육 프로그램 알리오플러스 공개 등

### ② 연기금 등 ESG 투자 확대

- 국민연금기금의 ESG 통합전략(ESG 요소 고려해 투자결정) 적용 자산군 확대(국내 → 해외 주식·채권)
  -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위한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 마련 추진
-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22년, 2,700억원)·탄소스프레드\*('22년, 5조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
  - \* 기업의 감축설비 설치, 저탄소 설비전환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이차보전

## 6 추진체계 : (가칭)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

- (추진배경) 부처간, 정부·기업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ESG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역할)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기능
- (운영) 기재부 차관 주재로 회의 개최('23년초 kick-off 회의 개최)
- (구성) 기재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행안부, 고용부, 금융위, 공정위 등

【 민관합동 ESG 협의회 】

구성	▪ 기재부 1차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 민간전문가
기능	▪ 부처별 ESG 관련 정책 협의·조정 ▪ 기업계·금융계 등 민간 의견 수렴
주요논의사항	▪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정책과제 ▪ ESG 경영·투자 논의 동향 및 활성화 방안 ▪ ESG 발표 정책 추진실적 점검 ▪ ESG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V 기대효과

①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 대응

- 공시기준·의무화 일정 등 마련을 통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가이드스 등을 통해 ESG 평가 신뢰성 제고
-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기업·투자기관의 ESG 확산 지원
- 기업과 정부간의 일원화된 소통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일관성 제고
-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해, 국내 실정에 맞는 ESG 인프라 구축

② 국내 중소기업 부담완화·경쟁력 제고

- 국내 ESG 경영 요구 확대에 대비해 교육·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 \* ESG 이행 가능한 기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가능
- 우리 수출·협력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통해 ESG 대응력 향상 → 글로벌 ESG 제도화를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

- ※ [참고] 국제 ESG 규율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공시국제표준화) ISSB의 국제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최소의 통일기준으로 적용 전망 > 우리 수출·협력 기업이 동 기준에 따라 국제 공시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산업에 타격 예상(한국 CBAM 적용 품목(9개)의 대EU 수출규모 연평균('19~'21년) 55.1억불)
  - (공급망실사) 실사이행, ESG 전문인력채용, 컨설팅·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우리 수출·협력기업의 경쟁력 약화(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산업 등 우선 타격)

**③ 국내 ESG 경영·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

- 우리 기업이 재무적 이익뿐 아니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도록 유도
-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 기업·투자기관의 역할 강화

**VI 향후 추진계획**

과 제	'23년	'24~'25년	담당 부처
<b>① ESG 공시제도 정비</b>			
<b>① 공시 국제표준화</b>			
▶ESG 공시 표준화 논의 참여			금융위
▶ESG 국내 공시기준 마련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			금융위
<b>② 공시·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b>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b>② 중소기업 지원 강화</b>			
<b>①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b>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산업부
▶체크리스트·자가진단 고도화			중기부
▶교육·컨설팅 강화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인센티브 제공			조달청, 금융위, 중기부, 산업부



<b>② 수출·협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b>		-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향상사업		산업부
<b>③ ESG 투자 활성화</b>		-
<b>①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b>		
▶녹색분류체계 시행		환경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사회적분류체계 마련		기재부, 산업부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등
▶ESG 지수 다양화 및 SRI채권 사후보고 강화		금융위
<b>②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b>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확산		금융위
<b>④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b>		-
<b>① ESG 정보제공·이용 활성화</b>		
▶ESG 플랫폼간 연계 강화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부, 중기부
▶환경정보·산업안전·기업집단 포털 고도화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b>② 전문인력 양성</b>		
▶ESG 관련분야 인력을 ESG 전문가로 전환		산업부, 환경부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신설		산업부, 환경부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산업부, 환경부
<b>⑤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선도</b>		
<b>① ESG 경영 촉진</b>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기재부
<b>② 연기금 투자 확대</b>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		보건복지부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금융위, 환경부
<b>⑥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b>		기재부 등